

특허소송 실무, 특허침해금지청구 대상 물건의 특정 방법 -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

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난제: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생산, 양도 등의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른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의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사항과 동일하여,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소 각하 판결

[별지]

목 록

1. 피코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아래 사진과 같은 원반 형상의 기재(基材) 위에 이트리아를 코팅한 것(단, 아래 사진에 표시된 직경, 외경, 기재의 재질에 한정되지 않음).



2. 피코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이며,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며,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에 먹어 들어간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고,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nm 이상 500nm 이하이고,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을 갖는 것.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로서(이하 '구성요소 A-1'이라 한다),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이하 '구성요소 A-2'라 한다),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구성요소 A-3'이라 한다),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으로 먹어들어간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A-4'라 한다),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nm 이상 500nm 이하이고(이하 '구성요소 A-5'라 한다),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이하 '구성요소 A-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nm 이상 100nm 이하이고(이하 '구성요소 A-7'이라 한다), 치밀도가 95% 이상 100% 이하인 것(이하 '구성요소 A-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